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,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
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
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
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,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
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
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
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피해등급을 현행 1~10등급에서 1~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
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(안
별표 5 및 별표 6 개정)
- 나.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
소득으로 변경(안 별표 5 개정)
- 다.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~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, 4~5등급은
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(안 제15조 및 별
표 5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,”를 “요양생활수당은”으로 한다.

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한다. 다만,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피해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 5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.

[별표 5]

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요양생활수당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피해등급	지급비율(%)
1등급	47.50
2등급	34.20
3등급	22.80
4등급	11.40
5등급	4.75
등급 외	미지급

비고란

1. <삭 제>
2.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5년간 월 단위로 지급한다.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3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, 제1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6]

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피해등급	지급비율(%)
1등급	1,500.00
2등급	1,080.00
3등급	750.00
4등급	500.00
5등급	250.00

비고

1. <삭 제>
2.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5조(요양생활수당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 ③ <u>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, 지급 기간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.</u>	제15조(요양생활수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한다. 다만,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피해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<u>요양생활수당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5] <u>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</u> 요양생활수당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,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피해등급</th><th>지급비율(%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급</td><td>47.50</td></tr> <tr><td>2급</td><td>42.75</td></tr> <tr><td>3급</td><td>38.00</td></tr> <tr><td>4급</td><td>33.25</td></tr> <tr><td>5급</td><td>28.50</td></tr> <tr><td>6급</td><td>23.75</td></tr> <tr><td>7급</td><td>19.00</td></tr> <tr><td>8급</td><td>14.25</td></tr> <tr><td>9급</td><td>9.50</td></tr> <tr><td>10급</td><td>4.75</td></tr> </tbody> </table> 비고 1. 피해등급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의 장애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 2.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한 날부터 3년마다 다시 피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	피해등급	지급비율(%)	1급	47.50	2급	42.75	3급	38.00	4급	33.25	5급	28.50	6급	23.75	7급	19.00	8급	14.25	9급	9.50	10급	4.75	[별표 5] <u>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</u> ----- ---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에 ----- -----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피해등급</th><th>지급비율(%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등급</td><td>47.50</td></tr> <tr><td>2등급</td><td>34.20</td></tr> <tr><td>3등급</td><td>22.80</td></tr> <tr><td>4등급</td><td>11.40</td></tr> <tr><td>5등급</td><td>4.75</td></tr> <tr><td>등급 외</td><td>미지급</td></tr> </tbody> </table> 비고 1. <삭 제> 2.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5년간 월 단위로 지급한다.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3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, 제1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	피해등급	지급비율(%)	1등급	47.50	2등급	34.20	3등급	22.80	4등급	11.40	5등급	4.75	등급 외	미지급
피해등급	지급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47.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급	42.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38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33.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28.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	23.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급	19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급	14.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급	9.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급	4.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해등급	지급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47.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34.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22.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등급	11.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등급	4.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 외	미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6]

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피해등급	지급비율(%)
1급	1,500.00
2급	1,360.00
3급	1,220.00
4급	1,080.00
5급	940.00
6급	800.00
7급	660.00
8급	520.00
9급	380.00
10급	250.00

비고

1. 피해등급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
2.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급으로 본다.

[별표 6]

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-----.

피해등급	지급비율(%)
1등급	1,500.00
2등급	1,080.00
3등급	750.00
4등급	500.00
5등급	250.00

비고

1. <삭 제>
2.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13